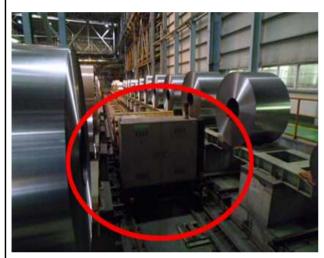
코일 이송용 대차에 부딪힘

재 해 개 요

'14. 9월 충남 당진시 소재 제철 공장에서 피재자가 코일 이송용 대차 운행 궤도에 들어가 청소작업 도중 이동하는 코일 이송용 대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코일이송용 대차)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BP야드장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으며, 피재자가 코일받침대에서 1.5m 하부의 이송대차 운행궤도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작업 도중 재해가 발생함

※기인물(코일 이송용 대차)

- 대차명 : Bㅇㅇ-3ㅇㅇ, - 전압 : 440V

- 속 도 : 120m/min(부하시), 200m/min(무부하시)

- 사전 관계부서(이송대차 운행부서)와 작업관련 정보공유 없이, 청소작업 전 이송대차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
- 이송대차에는 운행중임을 알리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(작동 표시등은 설치), 이동대차는 200m/min의 빠른 속도로 운행되었음

재해발생 원인

○ 무인 자동 코일이송 대차의 작업구간내에 근로자가 들어가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부딪힘 등의 사고우려가 있었으나, 이송대차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무인 자동 코일이송 대차의 작업구간에 들어가 청소작업시에는 불시작동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송대차의 운전을 정지시키고,
 - 다른 사람이 임의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

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-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러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